

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가. 품명 : W-31
- 나. 제품의 권고용도 : 원료 및 중간체 (Lubricating Oil Base Stock)
- 다. 제조자/공급자유통업자 정보

- **제조자 정보**

- 회사명 : S-OIL(주) 온산 공장
- 주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
- 담당부서 : 정유/윤활공정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자 : 윤활공정 담당자
- 전화번호 : (052) 231-3714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 번호 : (052) 231-2209

- **공급업자/유통업자 정보** : (상동)

- 회사명 :
- 주 소 :
- 담당부서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담당자 :
- 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FAX 번호 :

- **작성부서**

정유/윤활공정팀

## 2. 유해성·위험성

-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  - 해당 사항 없음

- 나.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- **그림문자**

- 해당 사항 없음.

- **신호어**

- 해당 사항 없음.

- **유해·위험문구**

- 해당 사항 없음.

- **예방조치문구**

- 예방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- 대응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- 저장**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폐기

- 특별한 예방 조치 문구 없음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(예. 분진폭발 위험성)

- 자료 없음

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| 화학물질명                    | 관용명 | CAS 번호     | 함유량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수소처리된 중질<br>파라핀 정제유 (석유) |     | 64742-54-7 | 100    |

### 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15 분 동안 다량의 의 물로 깨끗이 씻어낼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제거한 후 비눗물로 노출 부위를 씻어낼 것

다. 흡입했을 때

신선한 곳으로 즉시 옮길 것, 호흡이 멎었을 경우 인공호흡 및 필요할 경우 산소를 공급할 것, 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라. 먹었을 때

의사의 조치를 받을 것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자료 없음

### 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(부적절한) 소화제

포말 소화제, CO<sub>2</sub>, Dry Chemical(고체 화공약품), 물 분무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; CO, CO<sub>2</sub>

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밀폐된 화재 장소에 들어갈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호흡용 보호기구를 착용할 것, 과열된 용기는 물로 식힐 것

#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##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점화원을 차단하고 위험하지 않게 누출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누출을 중지시킬 것, 위험지역에서는 흡연, 불꽃 및 불을 금지 할 것, 불필요한 사람은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지역을 격리시키고 출입을 제한할 것

##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제품이 토양이나 수원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, 유출이 큰 경우에는 추후의 폐기를 위해 유출지역보다 넓게 둔덕을 쌓아둘 것

## 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모래나 기타 흡수제로 물질을 흡수시킨 후 추후의 폐기를 위해 용기에 보관할 것

#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열 및 습기를 피할 것

### 나. 안전한 저장방법

용기는 확실하게 밀폐시키고 처음 들어온 저장용기에 계속 저장할 것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자료 없음

#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작업장 전체 환기 및 국소 배기시설 설치 할 것

### 다. 개인보호구

#### • 호흡기 보호

정상 사용 환경하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 없으나 먼지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하에서 사용할 경우 산소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호흡기구를 착용, 유기물 정화 장치를 갖춘 전면 부착용 호흡기구를 착용할 것

#### • 눈 보호

보호안경을 착용함

#### • 손 보호

화공약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갑(예: 고무장갑)을 착용함

#### • 신체 보호

손 보호 시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- 가. 외관  
투명한 액체
- 나. 냄새  
탄화수소 냄새
- 다. 냄새역치  
자료 없음
- 라. pH  
자료 없음
- 마. 녹는점/어는점  
자료 없음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
자료 없음
- 사. 인화점  
206 °C 이상(ASTM D92)
- 아. 증발속도  
자료 없음
- 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  
해당 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 
0.9 ~ 7.0%
- 카. 증기압  
자료 없음
- 타. 용해도  
녹지 않음
- 파. 증기밀도  
자료 없음
- 하. 비중  
0.8 ~ 0.9
- 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  
자료 없음
- 너. 자연발화온도  
해당 없음
- 더. 분해온도  
자료 없음
- 러. 점도  
25.0 ~ 27.0 cst (@ 40°C)
- 머. 분자량  
자료 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 가. 화학적 안정성

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, 물과 반응하지 않으며 분리됨

### 나. 유해 반응의 가능성

없음

### 다. 피해야 할 조건

열, 화기와와의 접촉을 피할 것

### 라. 피해야 할 물질

강한 산화제

### 마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불완전 연소 시 CO 생성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자료 없음

###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#### • 급성독성

##### 경구

- 자료 없음

##### 경피

- 자료 없음

##### 흡입

- 자료 없음

#### •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자료 없음

#### •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

- 자료 없음

#### • 호흡기과민성

- 자료 없음

- **피부과민성**
  - 자료 없음
  
- **발암성**
  - 해당 없음
  
- **생식세포변이원성**
  - 자료 없음
  
- **생식독성**
  - 자료 없음
  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1 회 노출)**
  - 자료 없음
  
- **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**
  - 자료 없음
  
- **흡인유해성**
  - 자료 없음
  
- **기타 유해성 영향**
  - 자료 없음

- 다. 독성의 수치적 척도 (급성독성 추정치 등)
- 자료 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생태독성 자료 없음
-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 없음
- 다. 생물농축성 자료 없음
- 라. 토양이동성 자료 없음
- 마. 기타 유해 영향 자료 없음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방법

폐기물은 승인된 산업용 쓰레기 매립지에 매립

**나. 폐기시 주의사항**

다량일 경우 적절한 연소, 소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것

**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

**가. 유엔번호(UN No.)**

자료 없음

**나. 적정선적명**

자료 없음

**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**

자료 없음

**라. 용기등급**

자료 없음

**마. 해양오염물질**

자료 없음

**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**

자료 없음

**15. 법적 규제현황**

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해당 없음

**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해당 없음

**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제 4 류 제 4 석유류

**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**

폐기 시,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

**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**

자료 없음

**16. 그 밖의 참고사항**

**가. 자료의 출처** S-OIL 분석자료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-130 호 외

**나. 최초작성일자** 2010. 6. 11.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6 회, 2022.07.12

라. 기타

- EU 위원회는 IP 346 에 의해 측정했을 때 3% 미만의 DMSO(Dimethyl Sulfoxide)를 함유하는 물질에 대해서 발암 물질로 분류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하였음.